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375-0308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서울특별시 거주자	없음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6.16.(월)	25.06.23.(월)	25.06.26.(목)	25.07.01.(화)	25.07.03.(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불법행위재공급)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주택형별 세대수의 **9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분양사무실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보다 초과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 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6.16.(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30025**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5.03.(수)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174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6.23.(월)	25.06.26.(목)	25.07.01.(화)	25.07.03.(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134(신사동, 2층))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7431호(2025. 6. 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15길 54 (신사동)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18층, 6개동 | 총 424세대(조합 189세대(보류지 4세대 포함), 일반분양 235세대) 중 불법행위재공급 1세대[**특별공급 1세대(신혼부부 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신혼부부	계
2025930025	01	059.9700	59	59.9700	18.0832	78.0532	39.7824	117.8356	31.9311	1	1	1
	합 계									1	1	1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59	합 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1	1
합 계	1	1

■ 공급금액 표

[단위:원]

약식표기	구분	층	세대수	아파트 분양가	부대비용	계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59	103동 2호	6층	1	673,000,000	9,900,000	682,900,000	68,290,000	614,610,000	확장 및 옵션품목 변경불가

■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①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원]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59	13,970,000	1,397,000	12,573,000	

②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우리은행	1005-303-040095	두산건설(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계약체결 장소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불가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 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플러스 유상옵션)등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최초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한 사항과 동일하게 계약해야하므로 추가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일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 가능한 품목입니다.

①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약식표기	제조사명	선택안	설치위치 및 수량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59	삼성	3안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대	6,420,000	642,000	5,778,000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신혼부부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p>-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무주택요건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4-1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p> <p>■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p>
당첨자 선정방법	<p>■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p>
비고	<p>■ 소득기준</p> <p>- 소득 확인 시점</p>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6.1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087,437원	~12,009,323원	~12,643,467원	~13,626,320원	~14,609,174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p>건축물</p> <p>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td>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p>토지</p> <p>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p>■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p> <p>-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p> <p>-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p> <p>*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p> <p>-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p> <p>-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p> <p>*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p>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p>	<p>-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p> <p>-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p>
<p>당첨자발표 서비스</p>	<p>청약홈</p> <p>-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p> <p>- 조회기간 : 2025.06.26(목) ~ 2025.07.05(토) (10일간)</p>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6.26.(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및 계약체결 안내	
서류제출일자	■ 2025.07.01.(화)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포함
서류제출처	■ 조합사무실(서울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134, 2층(부영빌딩))
계약체결일자	■ 2025.07.03.(목) ※ 예비당첨자의 계약 체결일정 추후 통보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서류제출 방법 및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외통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전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분양사무실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팩스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분양사무실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분양사무실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사업자 확인까지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1년 이상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소명자료	해당주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 발급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주택 :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가격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시 (본인외 모두 제3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급신청자 (본인)	• 용도 :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위임장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분양사무실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서명)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6.)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 인터넷 발급용(정부24) 인감증명서는 사용불가합니다.(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구분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전년도(23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금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①, ②, ③ 해당직장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③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사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③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③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급여받는 대표자의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①, ②, 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② 세무서/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① 세무서/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분양사무실 비치 ② 세무서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자산 입증 서류 목록	*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현황”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재산세 납부내역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조건 청약자에 한합니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확인 및 소득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입증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서류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합니다.)

구분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특별시 : ETAX 이용안내>조회/발급>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특별시 외 : '위택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특별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관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표4]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근무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초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약신청자에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됩니다.)

-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상기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합니다. (해당 국가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해당 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체류 예외규정 적용 불가합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안내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5.06.26.(목) ■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5.07.01.(화) ■ 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134 (신사동, 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5.07.03.(목) ■ 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134 (신사동, 2층)
■ 공급금액(분양대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우리은행	1005-704-489200	신사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외 1
발코니	우리은행	1005-303-040095	두산건설(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우리은행	1005-301-136383	두산건설(주)

8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공통	<p>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명칭은 '새철역 두산위브 트레지움'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아파트 명칭 및 팻네임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 등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 상의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측량결과, 각종 평가 심의결과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본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면에 명기되는 면적, 치수 등은 실제 시공 과정에서 일부 경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사업 부지면적 등은 법령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내 대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되, 위치의 지정이나 분할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를 아파트의 다른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 수익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세대별 면적분할이나 위치지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황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은 분양 시점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공사의 디자인 가이드 지침에 따라 입면 디자인 및 마감 등이 동등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경계 및 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주지연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사업지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시행인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2(2017.10.19 시행)에 따른 표시(「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표시) - 진도MMI 등급 VII (최대지반가속도: 0.169g)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비에 대한 금원 확보와 금액 관리는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예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도로교통소음 예측평가결과에 따라 소음도 기준을 만족하며, 추후 소음이 법적 기준 초과 시 그에 따른 방음시설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이로 인해 조망 및 일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인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사업은 2015년 4월 8일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으로(최초 사업시행 고시 2015.04.16) 일부 규정은 최초 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본공사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 및 흠막이 등의 가시설 공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 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일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파트 단지명,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명칭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정화조,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용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 단지 외부시설물 등은 심의 의견 및 인허가 승인 조건, 공사여건, 특화디자인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설계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위치 및 면적, 개소, 형태 등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없이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시행(변경)인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전문위원회심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 협의결과 조건, 관계 기관 심의결과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수 식재계획과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p>부대복리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마감재료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주변의 도로, 통행로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교통혼잡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남측으로 21m 도로, 동측으로 11m 도로, 서측으로 21m 도로, 북측으로 16m 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차량운행에 의한 소음, 먼지,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도로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일부 조망권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경계 바깥의 도로, 공원, 완충녹지, 버스정류장, 유치원, 인근 주택가, 혐오시설 등의 현황은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인접 공원부지 내 주차시설이 설치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인근 도로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버스의 출발 및 정차 시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주변에 존치건물 등이 인접하여 주변 소음, 먼지, 분진, 조망권, 세대간섭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인근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불편과 준공 시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 기부채납시설, 도로계획 및 도로관련 시설물 등은 별도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부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의 방편으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위의 개발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p>사업지 주변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 등 시기 조정, 급당인원 변경, 설립계획 보류(취소) 결정 등 향후 여건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수용계획 등은 해당 관청의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초등학교는 서신초등학교, 중학교는 서부2중학교군에 배치될 예정이나, 서부교육지원청의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수립과정에서 내정학교가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및 입주 전 서부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단지</p>	<p>단지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공공시설,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등이 혼용되어 설계된 단지이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수경계획, 휴게공간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수종, 테마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 및 단지 내의 경사로, 단차 처리방안, 조경 계획 등은 본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상층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선 위치는 담당 인허가청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 및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로 진입하는 비상차량 동선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입주자 차량 외 지상으로 진입 가능한 차량은 소방, 치안, 이사, 우편(택배), 폐기물 수거차량 등 입주민 공공이익과 관련된 차량만 진입 가능하며 개별 사유로 지상에 차량 진입이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실과 협의하여 진입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 도로와 단지 내 도로와의 인접 또는 레벨차이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물(쓰레기분리수거장, 재활용품 창고, D/A(환기구), 자전거 보관소, 가스정압기, 주차장램프 지붕 등) 등은 위치,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치구조(어린이집, 경로당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공간(어린이놀이터, 녹지,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기계·전기실, 환기창, D/A(환기구) 등)과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이 주거동의 전·후측면 등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 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공사 시 규모, 위치, 개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시설 주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환기구) 등이 설치되며, 저층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헬륨, D/A(환기구)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상세 위치는 설계도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비주거 부분의 옥상 및 단지 주변에는 에어컨 실외기, 급배기, 환기팬,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등에 의해 일부 세대는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 외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녹지, 잔디, 수목, 전기·통신시설물(공용·외부조명 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물, 보도·차도 포장재, 수목관리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발생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시설물 명칭, 위치, 크기 등도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각 동 외부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의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상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2. 본 계약물건의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3.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시설, 놀이터, D/A(환기구), 천창,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산책로 및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헬륨, 실외기실, 배기탑 및 재연헬륨, D/A(환기구)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시선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외 시설물(출입구,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시설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야간조명,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블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아파트용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해당 시설의 옥상 또는 인근동 주변 및 동 1층 필로티 공간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이 아파트 공용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설치 상세 계획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상부에 실외기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권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동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동 옥탑과 축벽에 경관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반사,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동별 일부 직각배치로 계획되어 있어 서로 마주보는 일부 세대는 사생활권(프라이버시 등)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단지 배치도 및 분양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사양은 각동의 층수에 따라 인증 및 속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필로티 출입구는 구조에 따라 천장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각 동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옥외주차장 및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불빛에 의해 조망권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간섭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해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 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로비)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로비) 옆·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해 소음 발생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로비) 상부층은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작동에 의한 일부 저층세대의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2동 하부에는 경로당과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103동 하부에 어린이집, 104동 하부에 경로당 및 키즈카페가 위치하며, 103동 인근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며 103동,106동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소음 및 조망간섭, 사생활(프라이버시 등)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어린이집 옥상층 지붕, 난간 등으로 인해 인접동 일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및 조망권 침해, 소음, 진동,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동 최상층에는 펜트하우스세대가 배치되어있으며, 해당세대와 관련된 사항은 단지 배치도 및 분양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1층 세대 앞 조경식재의 경우 관계기관(소방)의 요청에 따라 에어매트 자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식재할 수 없으며, 사생활(프라이버시 등)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붕 및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공용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태양광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 소음, 진동, 기타 등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기계/전기실, 환기창, D/A 등)과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이 주거동의 전·후·측면 등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등의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 시 규모, 위치, 개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차량 출입구와 인접한 동의 저층부는 램프를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전동으로 인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에 인접한 세대는 상가 옥상층 지붕 및 난간 등에 의하여 조망권 등의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옥상에 인접한 세대는 방법상 취약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공용홀 내 창호의 개수와 크기가 주동마다 상이하므로 채광 및 환기가 불리한 세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p>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 외부 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형태, 재질, 크기, 색상 및 루버의 위치 및 크기 등은 심의 의견 및 인허가 승인 조건, 공사여건, 특화디자인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외관 및 색채, 마감, 동 현관 및 저층부 석재(또는 석재뿔칠) 패턴, 옥탑 및 지붕디자인, 경관조명, 부대시설 외관 등의 세부 디자인은 단지 외관 차별화를 위해 변경될 예정입니다. • 주동 측벽의 BI 설치 개수 및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벽 등에 부분 장식물, 조명 및 별도 마감재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동의 외벽에 부착되는 사인물, 장식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옹벽, 석축,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본공사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조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p>외관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차로의 유효높이 2.3m이상(주차공간은 2.1m이상) 확보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층별, 구간별 높이는 일부 상이할 수 있고, 본공사 시 레벨 변경 및 각종 배관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높이 일부 구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1~2층으로 2개층 계획되어 있으며, 동별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table border="1" data-bbox="459 627 2078 772"> <thead> <tr> <th>구분</th> <th>101동</th> <th>102동</th> <th>103동</th> <th>104동</th> <th>105동</th> <th>106동</th> </tr> </thead> <tbody> <tr> <td>지하1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하2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차량 진입은 101~102동, 101~103동 인근에 차량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주차장 출입부의 디자인은 분양모형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지하 주차장 차량 출입구, 통행로 유효 높이 : 지하1층, 지하3층 2.3m(주출입구), 지하2층 2.7m(택배차량 진입가능, 단지동측 차량출입구) • 단지내 주차장 진입 출입구 및 차로의 유효높이는 2.3m 이상 확보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2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지하주차장 층별, 구간별 높이는 일부 상이할 수 있고, 본공사 시 각종 배관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높이 일부 구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계획상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의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으로 승하차 시 이용에 불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공동주택용(부대복리시설용 등 포함), 근린생활시설용의 각종 배선, 배관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본공사 시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 수량 및 사양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구분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지하1층	●	●	●	●	●	●	지하2층	●	●	●	●	●	●
구분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지하1층	●	●	●	●	●	●																	
지하2층	●	●	●	●	●	●																	
	<p>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공동주택부지 내에 지역정압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 지하층 및 지하층 주변에 환ลม 또는 제연환ลม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환ลม 등은 본공사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발전기가 가동되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p>공용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가 장래에 전기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본 아파트 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설치 및 부지 무상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지내 한전패드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위치이동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수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MDF실 및 방재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일부 장비 및 서버는 시설별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며,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 및 전기요금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 TPS(통신실)는 필요한 층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법적 시설로서 그 위치 및 면적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CCTV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원패스 시스템은 공동현관문 자동열림 및 승강기호출(로비층)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는 방식(스마트폰Key방식)으로 별도의 원패스키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입주자 출입카드(RF 방식)를 사용하여 수동 Tag 또는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공동현관 출입 가능) • 원패스 시스템의 경우 일부 스마트폰은 제조사 및 OS 정책에 따라 연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층에 이동통신 설비용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하며, 무인택배함의 설치위치는 부출입구 지하1층 경비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 창호 등은 구조 계산 결과에 따라 형태 및 재질,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방화문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물레이션한 것으로 기본 제공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청약 및 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각종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단위세대 실내 천장고는 거실기준 2.3m이며, 실외기 및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과 욕실, 현관의 천장고는 각각 상이합니다. • 본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세대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주방상부장으로 지나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의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 배관은 세대 천장, 발코니 천장, PD 등을 관통하여 외부에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침실등이 침실 중심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 • 발코니 비확장(기본형) 세대의 경우 세대 내 창호 위치 및 크기는 차후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방향은 차후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 세대가 기본형(비확장) 세대인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사이즈가 상이합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건조기 설치시 보일러 점검 및 교체에 따른 건조기 이설 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가구, 마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내 가구장 상부 몰딩 및 복도 아트월 시트판넬의 형태는 본공사 시 마감 개선을 위해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수전 위치는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어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수납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온수분배기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음) • 세대 내부의 가구(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욕실장 후면 타일 미시공, 불박이장, 신발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시공 등) • 세대 내부의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경,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공간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침 방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 등이 있을 수 있음) • 주방상판은 제품 특성상 조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 및 나눔부위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공사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대피공간 도어, 발코니 도어 등)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포인트 타일 요철로 인해 줄눈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아트월, 현관바닥, 욕실, 다용도실 바닥 등의 타일 나누기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가구는 각 평형별 크기가 상이합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욕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에 시공되는 공장 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전기·기계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TV폰 배선이 후면기구에 연결됨에 따라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렌지후드 환기 덕트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상부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점검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실외기실에는 냉매배관 및 드레인 등이 노출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타입에 따라서 주방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동체감지기는 1~2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침실(출입문 뒤편) 또는 주방 식탁인근 벽면 중 한 곳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소등 스위치 기능 중 가스차단 기능을 실행할 경우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복구를 할 경우에는 주방에서 입주자가 직접 수동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호출기능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호출기능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세대는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세대는 거실과 안방에 실내기용 콘센트 반영) •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안방(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별도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선택시 안방 및 거실의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별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유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 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방 빌트인 가전류, 현관 중문, 침실 불박이장, We've UP&UP(유상옵션) 등)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위치 및 설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침실에 적용되는 전자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제어의 통합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제어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바닥배수구, 오수배관 입상, 수전금구류, 약세사리류, 위생도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네트워크 월패드, 주방TV, 욕실폰의 전화 수신 기능은 국선전화를 가입한 세대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욕실 내 욕조하부,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 외부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급수급탕 분배기는 욕실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급수, 급탕 분배기 설치부위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되며, 본공사 시 시공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홍통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세탁실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 세탁배수 배관은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하부세대에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우수 선홍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에어컨 운전시 실외기실 외부 그릴이 항상 열려 있는지 확인 후 운전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 하지 않는 상태의 문제 발생시 시공사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I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전용 인터넷 회선 설치 비용 등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 • 홈IoT/가전기기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를 설치하여야 하며(통신사 무관),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IoT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IoT서비스업체 제공)에서 세대 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제어가 가능하며,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스마트 가전제품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IoT 서비스 제공업체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함) • 홈IoT 서비스 사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동별사용검사일 포함)을 기준으로 IoT서비스 제공업체의 무상서비스 기간(24개월 또는 36개월 - IoT서비스 제공업체 정책에 따라 상이함)이 지난 날부터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입니다. (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 • 음성인식 서비스는 홈IoT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음성인식 스피커를, 가전제어 서비스는 홈IoT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가전기기를 각각 입주자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으로 별도로 구매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상기 음성인식 스피커와 가전기기는 제조사, 제품의 사양 및 모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홈IoT 서비스, 음성인식 서비스 및 가전제어 서비스는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일부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서비스의 제공이 종료될 수 있고, IoT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업정책에 따라 3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IoT서비스 제공업체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oT 서비스는 입주자와 IoT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관계이며, 시공사는 기본 인프라만 제공하는 것으로 IoT 서비스에 대한 내용 및 기술지원은 IoT 서비스 제공업체에 확인바랍니다. 단지 네트워크망과 연동하는 IoT 서비스 업체는 본공사 시 선정 예정이며(가전사 또는 이동통신사 중 1개사), 선정된 업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 집기는 본공사 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기본 제공 품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등은 공간 및 기본 마감재만 제공되며, 내부 집기류, 이동가구 및 장비 등은 제외됩니다. 부대복리시설 등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 관리됩니다. 부대복리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등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마감재 및 기본 제공 품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등의 일부 공간은 입주시 A/S센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내·외·옥상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홍보물(모형, CG 등)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과 외부도로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 출입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이용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02동 인근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입간판은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승인권자와의 사전협의 후(지침준수 등) 설치하여야 함)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제1호)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12023-101-0001000호	₩133,164,57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니다.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줍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 사업시행자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정보통신
상호	(주)신동아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삼우전기건설턴트	(주)아이비엔지니어링
금액	₩1,648,520,500	₩449,111,000	₩405,9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관계자 및 사업주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신사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두산건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274271-0006972	110111-0194277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134 (신사동, 2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논현동, 두산빌딩)

▣ 기타 유의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거 사용검사 전에 계약자가 도장 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 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입주 지정개시일 전 입주개시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행하며 그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4년 11월 예정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 예정일 1개월 전 통보 예정)
 - 실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약 7일 전부터 약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2021.02.19.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 실입주 월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2021.02.1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500세대 이상 단지는 60일 이상의 입주지정 기간을 제공합니다.
 - 입주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 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 예정자가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스카이라운지,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GX룸, 실내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경로당,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 샷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 모든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3항에 의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분양사무실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134 (신사동, 2층) ☎ 02-375-0308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